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4. 9. 5.(목)
제1차 경제산업위원회

-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경제산업위원회
전문위원 윤주현

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92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4. 8. 22.
- 회 부 일 : 2024. 8. 22.

2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(안 제16조의2)
 - (기존)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→ (개정)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
-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(안 제16조의3)
-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(안 제18조의2)
 - (기존) 발전시설 부지(임야)의 경계로부터 5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
→(개정)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
 - 제18조의2제4항 신설
- 별표 26의 개정 (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, 제75조의3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의12, 제70조의14

○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○ 추진경과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: 해당없음(기획예산담당관-7590)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기획예산담당관-7308)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없음(인구교육가족과-18169)
- 입법예고(2024. 6. 28. ~ 2024. 7. 19.) : 제출의견 3건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 제16조의2의 제2항과 제3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내 건폐율과 용적율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,
- 개정 조례안 별표 26에서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대상의 기존 개발행위 면적에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을 제외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였음.
- 또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1의 2를 근거로 태양광 발전부지 지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완충지역 적용하였으며, 태양광 발전 유지관리를 위한 태양광 부지와 포장도로 연결 등을 개정안에 담고 있어 자연재해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그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